

개요

지정위치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, 단원구 성곡동 일원
 기술핵심기관: 한양대ERICA 캠퍼스(R&D거점지구)
 배후공간: 사업화촉진지구(경기ITP등), 사업화거점지구(시화MTV산단)
 지정면적: 1.73km² (기술핵심기관 0.84km², 배후공간 0.89km²)

육성방향

특화분야: ICT 융복합 부품소재
 협동로보틱스 부품/ 고감도 IoT 센서/지능형 임베디드 모듈
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

육성계획: 융합서비스 동반성장
 PMX 이노티브 생태계 구축
 Parts(부품), Materials(소재), X=Multiple(융복합)

개발구상: R&D ⇄ BI ⇄ Post BI 연계 공간 운영



지정범위



과학기술기반
 고급일자리 창출의 중심지

INNOPOLIS⁺
ANSAN INNOVATION CLUSTER
경기안산강소특구

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
 미래를 열겠습니다.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강소특구육성1팀)
 15588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55 산학협력관 305호
 ☎ 031-400-4874 ☎ 031-400-4879

한양대학교 ERICA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
 15588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55 산학협력관 208호
 ☎ 031-400-4872, 4877-8, 4983 ☎ 031-400-4941
 ✉ ericainnotown@hanyang.ac.kr
 🌐 https://ericainnotown.hanyang.ac.kr/

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첨단기술기업이란

첨단기술기업이란
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
 정보통신기술·생명기술·나노기술 등
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
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으로서
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
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

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시행령 제12조의 3]

01 지정요건

특 구 입 주	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내 입주 절차가 완료된 기업
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	[산업발전법]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,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
매 출 액	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% 이상
연구개발비	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3~5% 이상

설립 자본금	50억 미만	50억원 이상~200억원 미만	200억원 이상
연구개발비 비율	5%	4%	3%

02 신청절차

-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**
신청기업
- 2 접수 및 확인**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- 3 현장 실사**
기술보증기금 등
- 4 지정 승인**
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5 지정부 교부**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• 신청 전,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

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, 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

03 신청서류

-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**
- 특허 및 첨단 기술제품 명세서**
[관련특허등록원부 (1개월 이내)포함]
- 기업부설연구소 사본**
 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 -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현황
 - 확인기간 연구소 직원 변동시 변동 신고서 사본
-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명세서**
 -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재무제표 [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]
 -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 직전 4분기 부가세 표준 증명원
 -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매출액 증명서 [첨단기술제품 매출원장]
- 첨단기술제품 확인서**
[신청서류 포함]
-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**
[1개월 이내]
-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**
 - 연구개발비 산정표
 - 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
 -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
 -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서류
- 주주명부 및 기타**
 - 주주명부 최근 및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식이동 명세서 사본

첨단기술기업과 관련된 세부사항 신청절차 확인 및 신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관리서비스 <http://minwon.innopolis.or.kr>을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.

04 지정혜택

세 제 혜 택

국 세
법인세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
지 방 세
재산세 취득세 감면

* 특구별 시세·도세·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최저한세'는 부과대상임

첨단고시 혜택

[산업통상자원부소관]

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 발급을 통한 혜택

- **법인등록세 증과 제외** [지방세법]
- **과밀억제지역 내 입지지원**
[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조]
- **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내 우선지원**
[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]
- **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금지원**
[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]
- **투자진흥지구 지정[입지]요건**
[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등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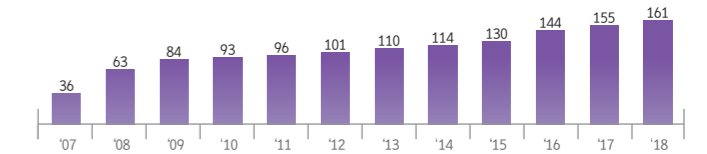
기 타 혜 택

- 가산점 부여**
 -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[사업별 공고문 참고]
- 특례 지원**
 - 국·공유재산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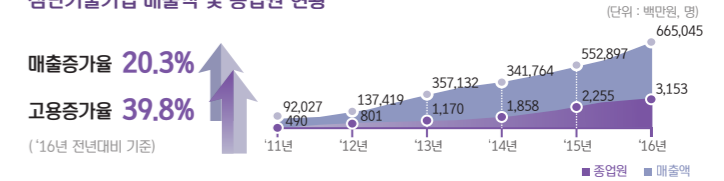


05 성장현황

첨단기술기업 설립현황



첨단기술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 현황



첨단기술기업 중 약 65%가 재지정 신청을 통해 지정기간을 연장

06 대표성공사례

제24호 첨단기술기업 (대덕특구, 2007.10 등록, 총 3회(6년간) 지정)

실리콘웍스

- 코스닥 성장일(10.6.8)
- 지정기간동안 약 170억원 이상의 세제감면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첨단기술기업의 우수사례가 됨

사업분야 : 반도체 제조

제45호 첨단기술기업 (대덕특구, 2008.06 등록, 총 3회(6년간) 지정)

골프존

- 코스닥 상장일(15.4.3)
- 지정기간동안 약 300억원 이상 세제감면을 수혜받아 신규연구 개발인력 확보 등에 주력할 수 있었으며, 이를 통해 첨단기술 사업화의 성공사례로 거듭남

사업분야 : 영상게임기 제조

4차 산업혁명 시대, **혁신성장의 견인자** 첨단기술기업